

의안번호	2218085
의 퇴 인	염태영의원
회 답 일	2026.4.6.
추계번호	26B1896

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제1항제8호 단서 신설 (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)	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음(제1항) 8.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「국유재산법」 제49조에 따라 매각한 대금 <u>다만, 「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제외할 수 있음<단서 신설></u>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5조제1항제8호 단서 신설 (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은 국유재산 매각대금 중 「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교통시설 특별회계 철도계정 세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, 철도계정 세입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
○ 그런데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향후 노선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대상 노선, 지하화 구간, 개발면적, 용도 지역 변경 범위, 부동산의 시장가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현재 이러한 철도지하화 관련 사업범위와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장래에 발생하게 될 개발수익 및 철도계정의 세입 감소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
－ 다만,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 세입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어 참고할 수 있음

[표 1]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: 철도계정

(단위: 억원)

	2024	2025	2026
철도계정 소계	44,775	37,672	48,807
관유물대여료	53	43	108
이자 및 재산수입	343	303	303
벌금 및 과태료	—	59	—
변상금 및 위약금	—	3	3
가산금	—	1	1
기타경상이전수입	83	299	10,792
잡수입	219	198	236
고정자산 매각대	40	12	22
토지 및 무형자산 매각대	935	935	1,728
정부출자 주식매각대	—	—	69
전년도 이월금	433	—	—
세계잉여금 이입액	1,828	818	430
일반회계 전입금	40,841	35,001	35,115

주: 2024년 결산, 2025~2026년 예산 기준

자료: 국토교통부 예산사업설명자료
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예승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